

의안번호	제11호
의 결 년 월 일	2026. 2. 5. (제334회)

금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금 산 군 수
제출년월일	2026. 1. 23.

# 금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

제11호

제출년월일 : 2026. 1. 23.

제 출 자 : 금 산 군 수

### 1. 개정이유

- 행정안전부의 「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」에 따라 월 구매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지역 내 소비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금산사랑상품권 월 구매한도에 관한 사항(안 제4조제6항)
  - (기존) 금산사랑상품권 월 구매한도 : 100만원
  - (개정) 「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」에 따른 한도 내에서 군수가 정함

### 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15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고
- 기 타
  -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: 해당없음(기획예산과-21496)
  -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(기획예산과-21180)
  -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(가족정책과-50011)
  - 입법예고(2025. 12. 10. ~ 2025. 12. 30.) : 제출의견 없음

금산군 조례 제 호

## 금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금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⑥ 개인이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월 구매 한도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「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」에 따른 한도 내에서 군수가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) ① ~ ⑤ (생략)</p> <p><u>⑥ 상품권의 월 구매한도는 개인의 경우 월 100만원 이하로 한다.</u></p>	<p>제4조(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⑥ 개인이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월 구매 한도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「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」에 따른 한도 내에서 군수가 정한다.</u></p>

## 금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안 제4조제6항에 따른 금산사랑상품권 월 구매한도액 조정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

(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.)

### 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·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고, 향후 국·도비 예산 지원에 따라 비용(변동)이 산출되므로, 예산 소요는 예상되는 기술적인 추계는 어려움

### 4. 작성자

- 경제과장 곽 병 국 (☎ 750-3010)

## 관 계 법 령

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
제15조(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·판매·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